

허가조건

제1조(사용 목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1년(2026. 7. 1.부터 2027. 6. 30.까지)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연간사용료는 금_____원으로 하고(부가가치세 포함) 사용료는 공단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인·허가 이행) 사용자는 인·허가 등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손해보험 등) ① 사용자는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금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에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한 각종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구조변경, 추가시설 설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공단이 안전, 위생, 소방 등의 점검을 위하여 허가재산에 출입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사용자에게 출입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재산에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공단 규정 등과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창고의 시건장치를 별도로 구매한 후 관리하여야 하며, 공단에 시건장치를 열 수 있는 열쇠 등을 주어 공단에서 상시 창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사항) 사용자는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의 양도
2. 허가재산에 대하여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허가재산의 용도 변경
4.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구조변경, 인테리어, 추가시설 설치 등)
5. 허가재산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단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9조(허가 취소) ① 공단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
3. 허가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② 공단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허가재산을 고의·과실로 파손한 경우
3. 창고 전대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구시·공단의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5. 제8조제3호 내지 제6호를 위반한 경우
6.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구시·공단의 상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거짓 진술, 거짓 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8. 제7조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대구시·공단의 사용허가 업무와 지하도상가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사용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 본인은 지하도상가 창고 사용자로서 위의 허가 취소요건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창고 사용에 있어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용자 서명 : (자필서명)

제10조(허가 취소요청)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 반환) 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단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였거나 원상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단이 원상회복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3조(연고권 및 권리금 불인정)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자의 연고권이나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공단의 면책) ①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단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② 공단은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상한다.

③ 공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6조(관계법령 적용 등) ① 본 사용허가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입찰 시 확약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등은 본 허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7조(관할법원) 공단과 사용자 간 사용허가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별조건

제1조(제재사항) 공단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창고 내 취사·취침 등 숙식행위
2. 창고 내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
3. 통행에 방해되거나 소방시설 이용에 장애가 되는 물건 방치 또는 적치
4. 창고 내 음주·흡연·도박·고성방가 등 행위
5.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이 있는 물품이나 재료 등을 방치
6. 별도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7. 폐기물·부패물 등을 보관하는 행위
8.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창고 관리,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시정요구

제2조(의무사항) 침습 누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바닥에 받침대 등을 받치는 등 보관물품에 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본인은 지하도상가 창고 사용자로서 위의 허가조건 및 특별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사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자료 등에 위조 또는 허위가 있거나 창고에 관해 전대·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202 . . .

사 용 자 : _____(서명 또는 인)